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방문축종	[] 소, [] 돼지, [] 기타 우제류, [] 닭, [] 오리, [] 기타 가금류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팩스:

신청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농장명(농장주명) (차량구분의 ①9만 해당합니다)
	운전자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란에 적습니다.
-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 구분	차량 유형	차량 구분	차량 유형
①	가축 운반	⑪	가금부산물 운반
②	원유 운반	⑫	가축사체 운반
③	알 운반	⑬	진료, 예방접종
④	동물(의)약품 운반	⑭	인공수정
⑤	사료 운반	⑮	컨설팅
⑥	조사료 운반	⑯	시료채취, 방역
⑦	가축분뇨 운반	⑰	기계수리
⑧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⑱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⑨	퇴비운반	㉑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⑩	난좌운반		

처 리 절 차

